

발송번호: 9-5-2023-023819813

발송일자: 2023.03.13.

제출기일: 2023.05.13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
주 소
대 리 인 성 명
주 소

출 원 번 호 40-2021-0255944
상 품 류 제 9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
제4020210255944호	제401819991호
	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(또는 유사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01819991호와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.

- 지정상품 : 전부.

☞ 행정사항 안내

본 의견제출통지 내용에 반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기일까지(통지서 상단 왼쪽 제출기일 참조) 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. **유선으로 심사에 대한 반박이나, 반대 의견 개진은 받아드려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절차에 정해진 의견서를 통해 출원인의 의사를 표명**하시기 바랍니다. 추후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최종 결정을 (출원공고나 거절결정) 하게 됩니다.

※ 우리청에서는 개인 출원인이 출원·등록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허 고객상담센터(1544-8080)를 운영하고 있으니, 신청서 제출에 대한 서식(절차) 문의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(Tel. 02-6006-4300)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지원요건 등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) 끝.

